

**2026년 제8차 공능유적본부덕수궁관리소 공무원 등 근로자
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**

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4일

공능유적본부장

□ **최종합격자**

채용분야	직급	최종합격자	
		응시번호	비고
안전관리원(단시간)	공무직	단시간-10	

□ **최종합격자 제출서류**

1.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**2026.9.7.(월), 14:00까지** 덕수궁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채용신체검사서 1부 [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가능]

나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(※ 붙임 1 서식 작성)

다.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
라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마. 사진(반명합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

바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(※ 붙임 2 서식 작성)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(02-751-0702)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
2. 결격사유 확인서 1부

[붙임 1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(덕수궁관리소)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☒주민등록 ☐여권 ☐외국인등록 ☐운전면허) 번호 : 123456-1234567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0000 년 00 월 00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 000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 0000.00.00.

전화번호 : 010-0000-0000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덕수공관리소 공무원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공능유적본부장 귀하